

1. 의결주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최소금액인 5만원을 30만원으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 등 권한 위임(안 제7조의2제1항)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권한을 위임함

나.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업무 위탁(안 제7조의2제3항)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위탁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빛공해 검사기관 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미이행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2”를 “법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시설·장비 검사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

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최근 1년간의 여러 위반행위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위반횟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2)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3)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법 제18조제2항제1호	30 60 90	50 100 150	100 200 300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500	700	1000
다.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2호	150	210	300
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1호	100	140	200

마.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3 항제2호	100	140	200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4. (생략)	제7조(조사·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 ----- ----- -----.
제7조의2(권한의 위임) <신설>	제7조의2(권한 등의 위임 및 위 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 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관 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 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자 료 제출 요구 및 시설·장비 검사 ② ----- 법 제17조의2제2항- ----- -----.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u>법 제12조제2항</u>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2. ~ 4. (생략) <u><신설></u>	1. <u>법 제12조제3항</u>----- ----- ----- 2. ~ 4. (현행과 같음) ③ <u>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67